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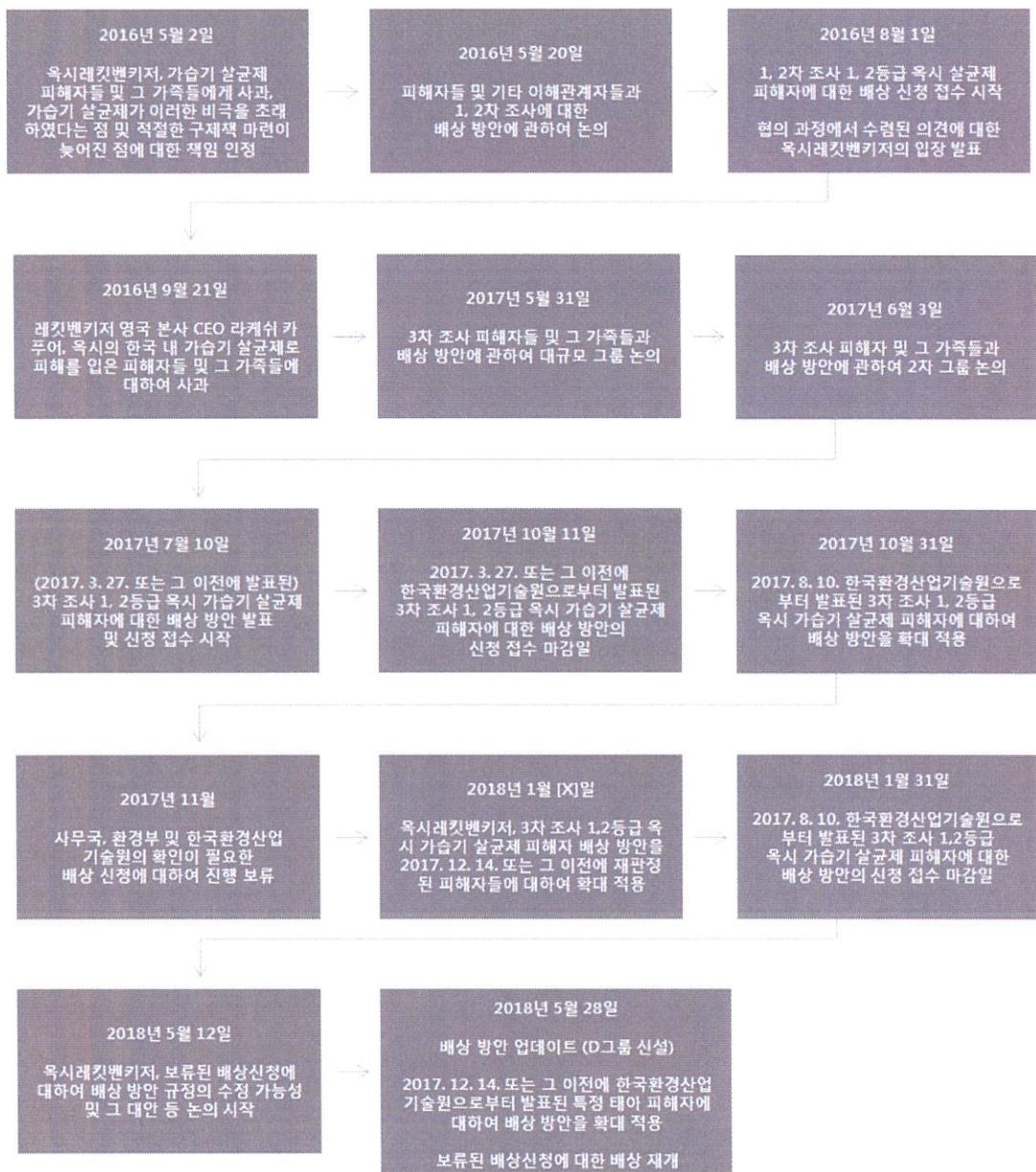
#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배상방안: 전문가 패널 검토 보고서

## 1 머리말

전문가 패널은 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이다. 본 패널의 역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특정 태아 피해자들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배상방안(이하 “배상방안”)을 공평무사하게 감독함으로써 해당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배상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함에 있다.

본 보고서는 배상방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본 패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본 패널은 배상지원 사무국에 정보를 요청하여 수령하였고, 배상방안과 관련하여 공표된 경과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 이행 지표들을 분석하였으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제공한 의견들을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전달 받아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본 패널은 배상방안의 이행에 있어서 적절히 실행된 부분과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주요 진행 경과



### 3 배상방안에 대한 검토

#### 3.1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의 소통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 업체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3 차 조사 피해자를 위한 배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대규모, 소규모 및 1 대 1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47% 이상의 배상 대상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배상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상방안에 반영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수렴의견개요 전문은 배상방안의 시행과 동시에 옥시레킷벤키저의 홈페이지<sup>1</sup>에 공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제	수렴의견의 요지	옥시레킷벤키저의 입장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함. 특히 기존 배상방안에 참여한 1 차 및 2 차 조사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함.	1 차 또는 2 차 조사 피해자 분들께 적용된 배상방안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3 차 조사 피해자 분들의 배상액을 산정하고 배상신청을 진행할 것임을 약속.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일시금 지급 방안과 평생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방안을 비용 발생시마다 상환 받는 방식에 대한 선호 조사 결과, 뚜렷한 합의는 없었음.	의료전문가 및 전문가패널의 의견 청취 결과 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평생 상환하여 드리는 방식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한 포괄적인 해결책 마련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하여 정부 및 다른 핵심 이해관계자들 역시 책임 있는 모습을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 분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sup>1</sup>[http://www.oxyrbkorea.co.kr/hs/compensation\\_2\\_2.asp](http://www.oxyrbkorea.co.kr/hs/compensation_2_2.asp)

	보여주기를 희망.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책임 있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
--	-----------	--

또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방안에 적용되는 자세한 배상규정<sup>2</sup>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배상 절차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명시함으로써 배상방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배상규정은 배상 절차 진행의 기본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모든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매우 받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배상규정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은 전담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배상방안의 시행 이후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 및 그 근거 역시 옥시레킷벤키저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최근 배상규정을 개정하여 D 그룹을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의 논의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개정된 배상규정의 내용 및 수렴의견 개요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상 합의가 체결되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된 레킷벤키저 그룹 CEO의 사과 편지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발송되었다. 그 내용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초래한 상상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에 대한 레킷벤키저 그룹 CEO의 개인적 사과와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본 패널은 1 차 및 2 차 조사에서의 배상방안(“**2016년도 배상방안**”)에 대한 1 차 전문가 패널 검토 보고서(“**1 차 패널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레킷벤키저 그룹이 배상액의 지급만으로 그들의 책임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진정하게 인정하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레킷벤키저 그룹 CEO 명의로 사과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그러한 뜻을 표명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옥시레킷벤키저나 배상사무국에서 배상 규정의 개정이나 배상 절차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좀더 꼼꼼하게 패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배상합의를 완료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받은 feedback의 결과 중 유의미한 내용도 패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sup>2</sup>[http://www.oxyrbkorea.co.kr/hs/compensation\\_2\\_2.asp](http://www.oxyrbkorea.co.kr/hs/compensation_2_2.asp)

### 3.2 배상규정에 관한 검토



배상제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자료이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겪은 수년간의 고통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 그리고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장래의 잠재적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들이 제출한 의무기록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령할 위자료의 액수(및 배상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실수입을 결정하는 항목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가 결정된다. 그룹의 분류 및 그러한 분류가 배상금에 미치는 영향은 배상규정에 설명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그룹은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장애평가기준” 및 피해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최근 12 개월 이내에 실시된 피해자의 폐 기능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옥시레킷벤키저는 그와 같은 폐 기능 검사 결과에 관해 재량권을 갖지 않는다.

그룹 분류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배상방안 위자료의 기준	
어린이 사망/ A 그룹 상해	금 10 억원의 정액 배상금에 포함 (여기에는 과거에 지출한 배상적격 비용, 일실수입 및 이자가 포함되나, 법률비용은 별도로 배상됨)
어른 사망	금 3 억 5 천만원
어른 A 그룹 상해	금 3 억 5 천만원

어린이/어른 B 그룹 상해	금 2 억원
어린이/어른 C 그룹 상해	금 1 억 5 천만원
어린이/어른 D 그룹 상해	금 7,500 만원 (여기에는 위자료, 일실수입 및 과거에 지출한 배상적격 비용이 포함되나, 법률비용은 별도로 배상됨)

### A~C 그룹

1 차 패널 보고서에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고려한 바 있는 (i) 각각의 피해자 별로 해당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기초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ii) 피해자들을 보다 세부적인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 또는 (iii) 모든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비하여, 피해자들을 세 그룹(A, B, C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당시 본 패널은 모든 방안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유일한 올바른 접근법이나 완전히 만족스러운 접근법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패널은, 각 그룹에 대한 배상금의 수준이 장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유사 배상 사례들 및 과거 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배상금의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차 및 2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추가 정부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배상의 공정성을 위하여 그룹 분류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상이한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이 상호 간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3 차 조사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에서 A~C 그룹 분류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변경된 사항은 폐 이식을 받은 상해 피해자들이 (이식 받은 폐의 기능과 관계 없이) 자동으로 A 그룹으로 분류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경은 2016년도 배상방안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미 도입되었던 방식을 확정한 것으로서, 이로써 폐 이식 환자에 대한 그룹 분류에 관한 배상규정상의 근거가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 D 그룹

2018년 5월 25일 개정된 배상규정에는 D 그룹이 새로 도입되었다. 옥시레킷벤키저 및 개정된 배상규정에 의하면, C 그룹 피해자들에 비해 현저히 경도 수준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D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D 그룹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에게는 위자료, 일실수입 및 과거에 지출한 배상적격 비용(단, 법률비용은 제외됨)을 포함하여 7,5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전달 받은 D 그룹 도입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배상신청이 등록되면 배상지원 사무국은 정확하고 공정한 배상제안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배상지원 사무국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판정 결과와 관련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전문가 패널에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례들의 개요 및 의학적 관점에서 사무국이 가지게 된 의문점을 검토하였고, 3차 조사에서의 피해판정 적용기준이 1차 및 2차 조사에서의 판정기준과 다르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입장에 동의하였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6건의 배상신청에 대한 진행을 보류하였고, 2018년 1월 배상신청이 보류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2018년 4월, 옥시레킷벤키저는 상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측과 만나 논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하여, 3차 조사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판정 기준이 1차 및 2차 조사의 피해자(특히 일부 어린이 상해 사례)에 적용된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상이한 조사에서 피해판정을 받은 분들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일환으로 배상규정에 새로운 “그룹”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3차 조사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로서 배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만나 논의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였다.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옥시레킷벤키저는 2018년 5월 25일 홈페이지에 “D 그룹”이 추가된 개정 배상규정 및 수렴의견 개요를 게재하였고, 개정된 배상규정에 따라 보류된 배상신청을 재개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옥시레킷벤키저는 3 차 조사부터 정부의 판정 기준에 변경이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경된 판정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배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인지한 후, 옥시레킷벤키저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논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신청의 진행이 된 것으로 전달받았다.

옥시레킷벤키저에 의하면, 의학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정 기준 변경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변경된 판정기준에 의해 상해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피해자들이 (1 차 조사 및 2 차 조사와는 달리) 3 차 조사에서 2 등급 판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D 그룹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배상방안을 계속 유지할 경우, 상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다른 피해자들이 동일한 배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들, 특히 상이한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 사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든 조사에 있어 동등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상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패널은 피해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차 패널 보고서에서 본 패널은 향후 이루어질 조사에서 인정될 피해자들이 1 차 또는 2 차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에 비하여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확인 받은 판정기준의 변경을 고려하면, 2016년도 배상방안의 그룹 분류 방식(즉, 배상방안에서 처음에 정했던 그룹 분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3 차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이 1 차 및 2 차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보다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상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최적의” 선택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많은 대안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는 “D 그룹의 도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패널은 D 그룹의 도입에 관하여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며, 다만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본 패널은 D 그룹의 분류 기준 및 그 배상금에 대하여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D 그룹의 분류 기준 중 특히 “이상 소견 없음”的 의미에 관하여, 본 패널은 그 적용에 있어 사무국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 또한 배상방안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신청인으로부터 재검토를 요청 받은 사안에 관해 (D 그룹 분류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배상규정의 정확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으므로, D 그룹 분류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D 그룹에 대한 배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옥시레킷벤키저는 유사한 정도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배상 사례들 또는 과거 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배상금이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됨에 따라 배상 신청이 보류되었던 많은 피해자들은 의무기록의 검토만으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배상금의 구성 항목들(옥시레킷벤키저에 의하면 D 그룹 피해자들의 경우 이와 같은 배상금의 구성 항목들이 의무기록상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함)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할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패널은 D 그룹에 대한 배상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에 더하여, D 그룹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에게도 옥시레킷벤키저의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배상규정상 건강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배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피해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요소 내지 불확실성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상해로 인하여 현재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측정하기 어려운 의료비 기타 불이익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위 제도들은 D 그룹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평생 지원

2016 배상방안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합의를 체결한 상해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비 및 간병비를 상환하여 주는 제도를 수립하였다. 본 제도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감독 하에 상환절차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AAI 헬스케어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다. 이 방안은 3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상해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있다.

1 차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옥시레킷벤키저의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는 상해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상환에 있어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다. 그러므로 향후 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바, 1 차 패널 보고서에서는 위 제도가 보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 정부 및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배상방안의 시행 전 3 차 조사의 피해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1)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및 (2)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이를 상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위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본 패널은 적절한 금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두 가지 배상방안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본 패널은 일부 피해자들이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시금 지급 방식은 수회에 걸쳐 적은 금액의 상환을 신청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금액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 피해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경우 그 금액은 상당히 클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본 패널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아니고,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수시로 상환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문제에 대한 본 패널의 결론은 의학적 불확실성에 근거한다. 정부, 보험회사 및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많은 수의 표본을 고려하는 경우 평균적인 의료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각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 비용의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는 결국 일시금 지급을 받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일시금을 모두 소진하여 향후 치료비를 지급할 만큼 충분한 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패널은 또한 일시금 지급에 의한 향후 치료비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폐 손상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는 향후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패널은 일시금 지급 방안이 장기적으로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매우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일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향후 치료비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패널은 궁극적으로는 옥시레킷벤키저 또는 AAI가 아닌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및 관리를 주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이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민간업체가 독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및 이와 관련된 건강 추적 조사와 같은 조치와 통합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배상규정의 공정한 적용

옥시레킷벤키저가 전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공정성 문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본 패널 역시 그간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이례적이거나 처리가 쉽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배상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바 있고, 그 결과 본 패널은 1 차 패널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제공한 문답서 및 각종 증빙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배상지원 사무국이 배상규정을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상금을 산정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배상규정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배상규정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배상방안의 경우, 본 패널이 개별 사례에서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이는 2016 배상방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다수의 실무례와 해석기준이 배상방안에 계속해서 적절히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배상지원 사무국 역시 2016 배상방안을 처리한 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고 하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각 조사 회차 사이의 공정성

옥시레킷벤키저가 전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상이한 조사 회차 및 상이한 배상방안 사이에 공정성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시레킷벤키저는 3 차 조사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2016 배상방안으로부터 얻은 교훈, 배상방안에 관하여 3 차 조사 피해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및 1 차 패널 보고서에서 제시하였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패널은 피해자들이 기존 1 차 조사 및 2 차 조사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에 등록한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배상을 원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는 상이한 회차에서 피해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 사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그룹 D 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3 차 조사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방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변경만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상방안에 대한 변경 사항 중 일부는 1 차 패널 보고서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진료기록 확보를 위하여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상지원 사무국이 관련 기록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들로부터 위임 받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현재 배상신청 단계에서 환경설문조사와 진료기록을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복수의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배상신청을 등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016 배상방안의 경우 배상지원 사무국은 해당 가족의 개별적인 상황 및 민법 원칙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가장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자체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방안에 등록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우선순위에 관해 배상규정에 보다 구체적인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배상규정은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상속인이 피해자의 상해/사망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을 할 경우, 다른 가족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배상신청 절차를 배상지원 사무국이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배상지원 사무국이 2016 배상방안 운영 과정에서 취해 왔던 접근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배상방안에 직접 반영한 사항들도 있었다. 폐 이식을 받은 상해 피해자를 A 그룹으로 자동 분류(위에서 언급), 어린이 사망 및 어린이 A 그룹 상해 피해자에 대한 일시금 배상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 지급한 금액 공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 지급한 생활자금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문답서에 명시, A 그룹 피해자들에게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C 그룹 피해자들에게 노동능력상실률 20% 적용(이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0%가 적용되어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음)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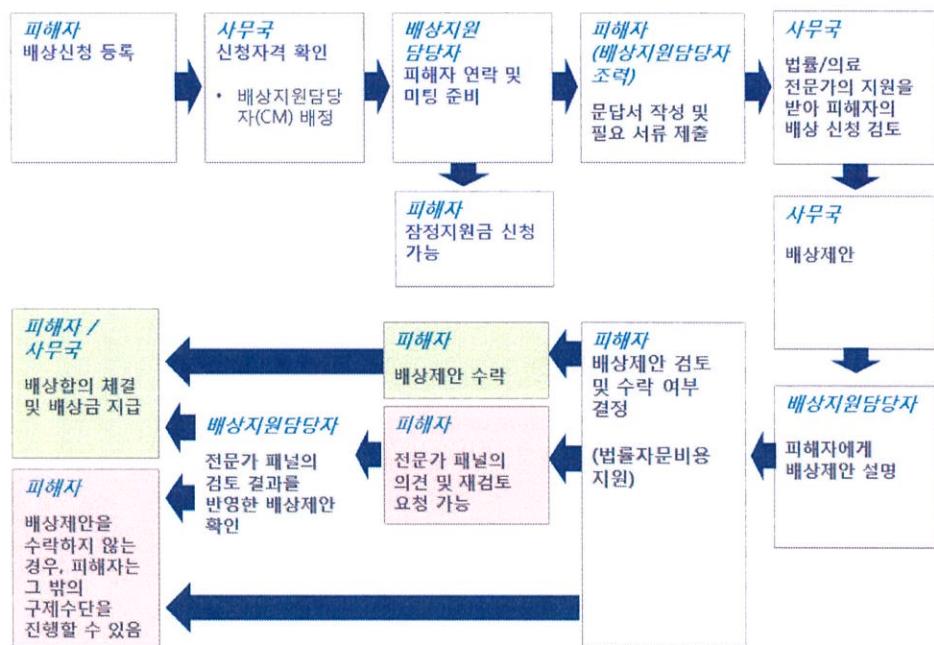
아울러 배상규정은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시작하였음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방안에 등록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배상규정은 배상방안에 등록한 후 다른 제조업체와 합의한 신청인의 배상신청 절차를 중단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단, 어느 경우에나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의 배상 합의가 피해자의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상신청 자격이나 배상방안 진행에 영향이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배상신청의 효율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피해자들 간의 잠재적인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규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3 개월(또는 2017년 3 월 27 일 이후에 피해 판정을 받거나 재판정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배상방안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날짜로부터 3 개월) 내에 배상신청이 등록되도록 마감일을 설정하였다. 일단 배상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증빙서류는 3 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일단 첫 번째 배상 제안이 신청인에게

이루어지면 신청인은 3 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배상제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3 개월 내에 관련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배상지원 사무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상공식을 적용하여 배상금을 산출한다. 피해자가 3 개월 내에 배상제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또는 본 패널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혹시레킷벤키저는 배상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

### 3.3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절차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하면, 다른 가습기 살균기 제조업체와 합의를 완료하여 배상방안에 등록하지 아니한 5 명의 피해자 및 배상방안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3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 대상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이 전원 배상방안에 등록하였다. 배상방안에 등록한 피해자의 수는 3 차 조사 피해자 수 전체의 96%에 달하며, 본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들 중 81%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배상제안의 수락

신청인이 배상 지원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문답서 작성은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출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사례에 배상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제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배상제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각 신청인이 그들이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옥시레킷벤키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배상 지원 담당자들은 많은 신청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배상제안에 대해 문의를 한 데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답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본 패널은 배상 제안이 배상규정(어떤 피해자가 D 그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바, 어떠한 피해자든지 본 패널에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본 패널이 해당 사안을 종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배상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배상 신청을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아래와 같다.

주요 사실 및 수치 :
각 배상 신청 유형별로 옥시레킷벤키저가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배상신청을 처리하는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어린이 사망 케이스: 17.00 영업일
어린이 상해 케이스: 80.81 영업일
어른 사망 케이스: 16.00 영업일
어른 상해 케이스: 53.55 영업일
케이스의 절차 진행에 가장 많이 소요되었던 시간은 199 영업일이다. 이 케이스는 상기 논의된 “보류 케이스” 중 하나라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본 패널은 개별적으로는 배상 신청이 이보다 지연될 수 있고, 그러한 지연이 피해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배상방안의 경우 많은 배상신청 사건의 진행이 보류되어 배상 신청의 처리가 지연된 것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보류 사례들의 경우, 옥시레킷벤키저가 그 접근 방식에 관하여 본 패널과 협의하는 등 대내외적인 의견 수렴 및 검토를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환경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수령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본 패널은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옥시레킷벤키저가 보류 사례들의 처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내외적 의사소통이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의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태아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 차 조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 영아/어린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태아 피해자들을 발표하였다.

- 임신 중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태아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로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 생존하여 출생하였으나 임신 중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출생 후 사망한 경우

2018년 5월 25일, 옥시레킷벤키저는 위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태아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배상방안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패널은 위 태아 피해자들에 대해 현재의 배상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피해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공정한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태아 피해자의 경우, 어머니가 1차, 2차 또는 3차 조사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분류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배상절차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두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상방안을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본 배상방안 또는 2016년 배상방안을 통하여 배상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일관성 있는 배상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본 배상방안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타장기 및 타질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정부 판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배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4 권고사항 및 맷음말

배상방안과 관련하여 본 패널은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 및 결론에 이르렀다.

-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방안에 따른 배상에 참여하였고, 다른 사례에서의 배상방안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상공식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배상방안에 따라 합의된 배상신청의 숫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옥시레킷벤키저가 지속적인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배상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배상방안에 따라 배상절차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본 배상방안에서는 기존 배상방안의 교훈 및 권고사항,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성 유지 및 판정절차의 변동에 대한 대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데 그 동안 옥시레킷벤키저가 균형을 비교적 적절하게 유지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옥시레킷벤키저가 향후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3 차 조사에서 취한 방식과 동일한 접근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업체가 독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및 이와 관련된 건강 추적 조사와 같은 조치와 통합하여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D 그룹의 도입 배경, 배상규정에 명시된 D 그룹 판정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로서는 배상신청 당시 적용되었던 배상규정이 중요한 측면에서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D 그룹으로 분류함에 있어 최대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D 그룹으로 분류되는 피해자의 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배상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상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해자들을 D 그룹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한다.
- D 그룹에 대하여도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이상의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향후 배상규정을 보완할 때에는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이 연장되고 가동연한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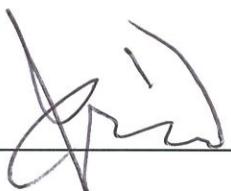
전문가 패널

2018년 8월 21일

이성보 변호사

서명: 

이용진 교수

서명: 

김동수 교수

서명: 